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최종윤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812

발의연월일: 2020. 9. 11.

발 의 자:최종윤·송재호·조승래

최혜영 · 김진표 · 남인순

인재근 • 이용빈 • 임종성

허종식 · 정춘숙 · 양정숙

강선우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법에서 수입식품등의 위해방지 또는 안전정보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하여 수출국 정부 또는 해외제조업소에 대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, 우수수입업소 등록 신청이나 등록된 우수수입업소 에 대한 기준 적합성 여부 확인을 위하여도 해외제조업소에 대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러한 현지실사 업무를 위하여 해외식품 위해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데 시행규칙에서는 해외식품 위해평가기관으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또는 별표로 규정한 지정 요건을 충족한 기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있음.

그러나 2016년부터 사실상 현지실사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 원에서 단독으로 수행하고 있는 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비롯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진 기관이 안정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법에서 현지실사 업무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것임(안 제9조, 제10조, 제36조 및 제44조).

참고사항

이 법은 최종윤의원이 대표발의한 「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3813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법률 제17245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9조를 다음 과 같이 한다.

제9조(현지실사 등 위탁)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현지실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「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법률」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-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8조제2항에 따른 위생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0조에따라 지정된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현지실사 등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고,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"제9조에 따른 현지실사"를 "제9조제2항에 따른 위생평가"로 한다.

제3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현지실사에 필요한 비용 제44조제1호 중 "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의 임원 및 직원"을 "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혅 했

법률 제17245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9조(현지실사 등 위탁) ① 식품 제9조(현지실사 등 위탁) ① 식품 의약품안전처장은 제6조 및 제 7조에 따른 현지실사와 제18조 제2항에 따른 위생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해외식 품 위생평가기관에 위탁할 수

있다.

- ②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아 현지실사 등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게 보고하고, 관련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.
- ③ 현지실사 등의 보고 시기 및 방법, 제출 서류 등 세부사 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.

개 정 아

법률 제17245호 수입식품안전관리

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의약품안전처장은 제6조 및 제 7조에 따른 현지실사를 효율적 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 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「한 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

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8 조제2항에 따른 위생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해외식 품 위생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탁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 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현 지실사 등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

제10조(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 등) ① 식품의약품안전처 장은 <u>제9조에 따른 현지실사</u>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 하기 위하여 전문적으로 평가 를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을 지 정할 수 있다.

제36조(국고 보조) 식품의약품안 전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 음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- 1. (생략)
- 2.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의 현지실사에 필요한 비용
- 3. ~ 6. (생 략)
- 제44조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「형법」 제129 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 - 1. 제9조에 따른 위탁업무를 수

게 보고하고, 관련 서류를 제출
하여야 한다.
제10조(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
지정 등) ①
제9조제2항에 따른 위생
평가
<u>-871</u>
케이(코(그ㅋ ㅂ코)
제36조(국고 보조)
1. (생 략)
2.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현지
실사에 필요한 비용
3. ~ 6. (현행과 같음)
제44조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
제)
~ 'II /
1

행하는 해외식품 위생평가기	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
관의 임원 및 직원	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